

1.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8개동 총 812세대 중 일반분양 176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구분			44A	44B	49	59A	59B	59C	59D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특별시	-	-	-	-	1(5)	1(5)	1(5)	3(15)
		경기도	-	-	-	-	-	-	1(5)	1(5)
		인천광역시	-	-	-	-	-	-	1(5)	1(5)
	국가유공자		-	-	-	-	1(5)	1(5)	1(5)	3(15)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1(5)	1(5)	1(5)	3(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1(5)	1(5)	1(5)	3(15)
	중소기업 근로자		-	-	-	-	1(5)	1(5)	1(5)	3(15)
	합계		-	-	-	-	5(25)	5(25)	7(35)	17(85)

※ 추천대상자 / (예비대상자)

추천대상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및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및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 합니다)

- 분양 예정일정(입주자모집 승인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분양 예정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 08. 07(금) 예정	- 일간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https://summitclavion.com) - 분양문의 : 1577-4991 -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특별공급 청약	2026. 08. 18(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09:00 ~ 17:30 -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 ~ 14:00까지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당첨자 발표	2026. 08. 27(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본 청약일정 및 건본주택의 위치는 인허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당사 건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입주자모집 승인 전으로 공급금액 및 분양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 승인일에 따라 분양일정(특별공급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변경 시 재안내 예정)
- 본 청약안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10.31.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청약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되고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추천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및 통보한 자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자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및 통보한 자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될 수 있는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기관부서

구 분	해당기관	연락처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02-2125-0878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492
장애인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02-2133-9611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032-440-2966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031-8008-4323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2-2110-6323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자격 요건

공급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구분 | | 처리방법 |
|----------------|--------------------|---|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비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합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준 확대 (2024. 12. 18. 개정)

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아래사항에서 정하는 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견본주택 청약 접수 시 제출)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인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인간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인감도장		• 인간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전체포함)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대리인 신청시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간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불필요)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 및 기준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 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 번 이후에도 낙점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점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 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기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 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을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입주자선정일(동·호수 추첨 및 계약)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위치도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현 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원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 대표번호 : 1577-4991
- 홈페이지 : <https://summitclavion.com/>

써밋 클라비온 홈페이지 QR코드



※ QR코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